

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(안)  
심사 보고서

'93. 5. 17.  
총무재무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'93. 4. 26. 마포구 청장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'93. 4. 30
- 다. 상정일자 : 제16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 ('93. 5. 17) 상정,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총무과장 김석봉)

## 가. 제출이유

정년퇴직 또는 정년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만 퇴직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별정직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.

- 나.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또는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이 예정되는 별정직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,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, 지방공무원법의 개정('91. 5. 31. 제4370호)에 따른 인용조문을 수정함.

-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김건재)
 

주요골자는 '91년 5월 31일 법률 제4370호로 개정 공포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동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,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및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이 예정되는 별정직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임.

이는 지방공무원법 제66조 및 제66조의 2의 규정과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인사 관리조례 제7조 등에 근거한 것으로 특이 사항은 없음.

## 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질의(유남렬 위원) : 본 조례 제2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, 정년퇴직일전 3개월의 특별휴가를 할 수 있는데, 현재 특별 휴가는 얼마나 실시되고 있는가?
- 답변(총무과장 김석봉) : 퇴직예정자를 대상

으로 희망자의 신청에 의해 특별휴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거의 모든 대상자가 신청을 하여 90% 이상 실시되고 있음.

5. 토론효지 : 없음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8. 기타사항 : 없음

##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(안)

제출년월일 : 1993년 4월 26일  
제출자 : 마포구청장

## 1. 개정이유

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공무원만 퇴직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별정직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골자

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또는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이 예정되는 별정직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, 지방공무원법의 개정('91. 5. 31. 제4370호)에 따른 인용조문을 수정함.

(안 제24조 제6항)

## 3. 개정근거

- 가. 지방공무원법 제66조, 제66조의2
- 나.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 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제7조
- 다.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장 임용등에 관한 규칙 제11조

## 4. 신·구조문대비표

“별첨”

##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⑥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경력

직 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및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.

부 칙  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(안)
<p>제24조 (특별휴가) ①-⑤(생략)          ⑥ 법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이나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을 할 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.</p>	<p>제24조 (특별휴가) ①-⑤(현행과 같음)          ⑥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및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.</p>

##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 관한 조례(안) 심사보고서

'93. 5. 18.

총무재무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'93. 4. 30. 마포구 청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'93. 5. 6.

다. 상정일자 : 제16회임시회 제2차위원회('93. 5. 18) 상정,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)

## 가. 제출이유

새마을이동도서관의 위탁운영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직원임용 등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서 이동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## 나. 주요골자

○ 이동도서관의 설치·관리 : 구청장이 새마을 운동 중앙협의회 구지회장에게 위탁

○ 운영비보조 : 구청장이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구지회장에게 보조

○ 직원임용 :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서울특별시 지부회장

○ 지도·감독체계 : 구청장 및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서울특별시 지부회장이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구지회장을 지도·감독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김건재)

○ 행정영역의 확대에 따른 행정작용의 다양화 전문화로 인하여 행정기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예가 증가하고 있는바, 이는 양적으로 광범위한 행정업무의 부담을 덜고 전문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.

○ 동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.

○ 동 조례안은 특정 민간단체를 수탁자로 지정한 관련 규정의 타당성 검토와 함께 수탁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지침 시달 및 행정체계 등 적절한 제도적 보완 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